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6회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송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 12. 22. 2017년도 제6회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한 재결서 정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자 안내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결서 정본 1부. (별도 송부) 끝.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주무관 김경훈 건설행정팀장 정명섭 지역계획과장 연가 건설도시국장 김정선 전결 2018. 1. 4.

협조자

시행 지역계획과-299 (2018. 1. 4.) 접수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지역계획과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7325 팩스번호 061-286-4802 / kkh3169@korea.kr / 비공개(6)

200만 전남도민이 평창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재 결 서

수용재결 : 지산면소제지 종합정비사업

2017. 12. 22.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 결 서

사 업 명 :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소 유 자 : 설경술

재 결 일 : 2017. 12. 22.

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2목록 기재 물건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29,100,500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18. 2. 8.로 한다.

이 유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위

사업시행자 진도군수는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 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진도군 고시 제2015-21호, 2015.5.6., 같은 고시 제2017-4호, 2017.2.2.)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인접 건물 2동 및 잔여지 매입 요구, 보상가 저렴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재결신청 경위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소유자 등의 주장

「토지보상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원회 판단

가.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 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물건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목은 수종, 규격,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하되,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29,100,500원** (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4.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18. 2. 8.**로 한다.

별지1 - 보상액 내역(토지)

【 사업명: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단위: 원)

연번	소재지	지번	수용토지의 표시		면적 (㎡)	보상액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목	현황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합계		1필지			342		15,219,000						
1	지산면 인지리	304-32	담	담	342	44,500	15,219,000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37	설경술				

별지 2 - 보상액 내역(물건)


【 사업명 : 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량 수	단위	보상액		물건 소유자		권계인		비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13,881,500					
			창고	조적조 스테크	24.10	㎡	일괄	4,097,000					
			비닐하우스	철피이포비닐	75.00	㎡	10,000	750,000					
			담장	블록	13.5	㎡	일괄	445,000					
			후박나무		1	주	일괄	1,155,000					
			시철나무		2	주							
			감나무		1	주							
			수국		1	주							
			정미		3	주							
			포도나무		1	주							
			능소화		3	주							
			비자나무		1	주							
			은행나무		1	주							
			저귀나무		2	주							
			동백나무		1	주							
			꽃사과		1	주							
			창고외화장철	조적조 스테크	25.30	㎡	225,000	5,692,500					
			미담	콘크리트	103.00	㎡	14,000	1,442,000					
			등산이전비		1.00	식	300,000	300,000					
1	지산면 인지리	304-32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37	설경술			


(단위: 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정병섭 

위원

강남진 

위원

박인출 

위원

이민아 

위원

한소영 

위원

고은혜 

위원

김병곤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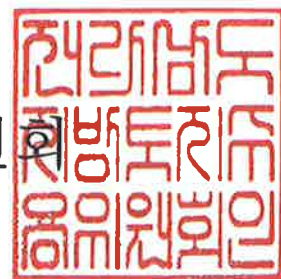
오진영 



위 정보입니다.

2017. 12. 22.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간사 김홍

